

영등포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9. 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34호로 2013년 8월 2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민간위탁운영의 관리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보완함으로써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제4조)

- 계약기간 연장 조항인“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조항 삭제

나.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조항 신설(제4조)

- 수탁기관 선정기준·방법 등 명시(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 규정 명시

(여성위원 40% 이상, 위원중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

다. 협약내용 공증이행 조항 신설(제4조)

라. 수탁자의 의무 중 개인정보 보호 조항 신설(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 제13조, 제13조의2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
- 「지역보건법」 제9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관리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침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안 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3항에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서 “수탁기관 선정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위탁기간 연장조항을 삭제하였고
- 안 제4조제2항, 제4항, 제5항에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 수탁기관 선정 시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고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7조에서는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수탁자와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함.

- 안 제6조제5항에 수탁자의 의무 중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그 밖에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6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합리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충당되고 2013년도 사업예산으로 시비포함 5억 9,100만원이 편성되어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음.

참 고 자 료

1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⑤ 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4.1.29]

제13조의2(정신보건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본조신설 2008.3.21]

2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단체)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전문개정 2009.3.18]

3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제24조(권한의 위임등)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